



제340회 임시회
2022. 9. 20.(화)

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제 안 설 명 서

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

김 명 숙 의원

제 안 설 명 서

○ 안녕하세요?

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의원입니다.

○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(12)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, 「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○ 제안설명에 앞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○ 먼저,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정보통신산업 육성과 지역특화 산업과의 융합 활성화를 통해 지역 동반성장과 상생을 도모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적·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.

-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, 정의,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,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- 안 제7조는 충청남도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기능은 기존 「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」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 과학기술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- 안 제8조는 정보통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- 안 제9조부터 제12조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연구개발 지원, 사업화 지원,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- 끝으로, 안 제13조는 제9조에서 제12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.
-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,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 산업과의 융합 활성화를 통해 지역 동반성장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
-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울러,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,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